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3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송언석・구자근・김미애

백종헌 • 김종양 • 김석기

고동진 · 성일종 · 권성동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 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 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
	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u>다.</u>